#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6597

제출연월일: 2024. 12. 17.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전단 중 "위원장"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1명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장이"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장"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54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 가도서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도서관위 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	①
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	
하여 <u>대통령</u> 소속으로 국가도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장</u> 은 사무기구의 업무수	④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도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관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	<u> "공동위원장"이라 한다)</u>
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u>위원장</u>	① 공동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	<u>원장 2명</u>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	사람이 된다.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호선(互選)된 사람 1명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 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 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 한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 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 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⑧ (생략)
-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 저 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 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
려하여
<u>⑤</u> 공동위원장
<u>.</u>
④ 공동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
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
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
<u>장</u>
⑦·⑧ (현행과 같음)
세13조(위원의 해촉) <u>문화체육관</u>
<u> 광부장관</u>

있다.

1. ~ 4. (생 략)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 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장</u>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 <u>장(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u> 동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15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